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출결 상황 관리에 대한 안내

※ 다음 안내 사항 이외의 출결관련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을 따릅니다.

1. 출석: (2021학년도 출석일수: 191일,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참 고
결 혼	• 형제, 자매, 부모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불가)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질병결석)

1) 3일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제출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받은 경우

①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를 첨부+ ② 결석신고서 제출

2) 상습적이지않은 1~2일의 단기결석: ①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담임교사확인서 등)가 첨부된 ②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면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결석신고서 + 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뒷면계속

라. 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출석, 체포, 도피, 구속, 수감 등)
-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2021 체험학습 추진 지침)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마.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사유는 결석사유와 동일하게 처리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8:45)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1) 수업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 2) 수업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나 수업 도중에 교실을 나가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 3) 수업(또는 종례)이 종료 되기 전에 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거나 수업(또는 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 4) 보건실 사용으로 인해 수업에 불참한 경우 질병결과로 처리

라.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마.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바.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4. 체험학습(개인교환, 단체교환, 교외체험학습 등)

○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 [양식: 전주서중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 일수

일반교외체험학습 연 15일, 가정학습 15일 연속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공유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교외 체험학습 불허 사항

-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의 동의하에 학교장이 승인함

◇ 신청, 절차 등 전주서중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 확인.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별지1]

감염병(코로나19)관련 출결관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등교중지 학생이 학교보건법 제 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함.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함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p style="font-size: small;"><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p>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p>[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hr/> <p>[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p>※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대상 학생별 정의 】

-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 ※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대상자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 참조
- **임상증상 발현 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참고 9]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4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 고위험군학생 】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 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기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16쪽 참고)
-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 단,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 ※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202. 3. .

전 주 서 중 학 교 장 (직인생략)